

# 고 시 문

##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17호

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 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「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34호, 2023.9.1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
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 1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례)**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

(단위 : 천원/m<sup>2</sup>)

항 목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	지하층건축비 (지하층면적기준)
직접공사비	1,334	706
간접공사비	516	270
설계비	45	
감리비	17	
부대비	126	

주1) 지상층건축비는 16~25층 이하, 주거전용면적 60m<sup>2</sup>초과~85m<sup>2</sup> 이하를 기준으로 함

주2)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

- 직접공사비 = [해당 지상층건축비 - (설계감리비 및 부대비)] × 72.1%
- 간접공사비 = [해당 지상층건축비 - (설계감리비 및 부대비)] × 27.9%